

## 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③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회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 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9개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위원회(9명)

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② 사무처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

### ①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경쟁주창)시킨다.

### ②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 ③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 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 ④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 △ 부당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005년 1월부터 공정위 하도급국에 '부당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와 동 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부당 하도급단가 처리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단가 관련 신고사항을 중점관리하고, 접수되는 사건은 가시적인 조치가 신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고는 전화, FAX,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가 원사업자, 납품명(거래명),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행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범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로 사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직권인지 사건'으로 처리한다.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신고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 고용종업원수의 2배 이하인 경우
- ③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④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 4.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 5. 사건처리 절차

### ① 심사절차

범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범위반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국이나 관할 지방사무소는 당해 사건의 심사에 착수한다.



사건심사는 관련서류에 대한 조사, 당사자들의 진술청취,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청취, 법적 검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득된 업무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된다.

심사관(담당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은 심사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 ②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들은 제출

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다.

피심인들에게는 심판일시 및 장소 등이 통보된다.

심판정에서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의 의견진술, 피심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의 범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범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 6. 공정거래위원회 운용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 중 설비건설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물품의 부당한 수령거부·반품 등을 금지하고, 하도급 대금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일을 넘기면 일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한 대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7. 신고처 및 상담 문의

신고처	주소	전화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www.ftc.go.kr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426-760)	02)503-1944	02)507-6563
건설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전국) www.ksca.or.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135-701)	02)549-2105/6	02)516-5360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 경남, 울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채신보협회관 8층 (600-711)	051)466-3191/2	051)466-324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B/D 9층(501-030)	062)225-8462	062)225-8460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 B/D 8층(301-736)	042)531-8574/9	042)527-306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 경북)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706-715)	053)742-9142/6	053)742-9149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터넷은 공정위 본부사이트에 접속시 볼 수 있음